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화”를 화두로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근거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⑥ (생략)